

저탄소 축산물(돼지·젓소)인증 시범사업 신규 희망 농장 모집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식품 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희망 농장을 모집합니다.

2024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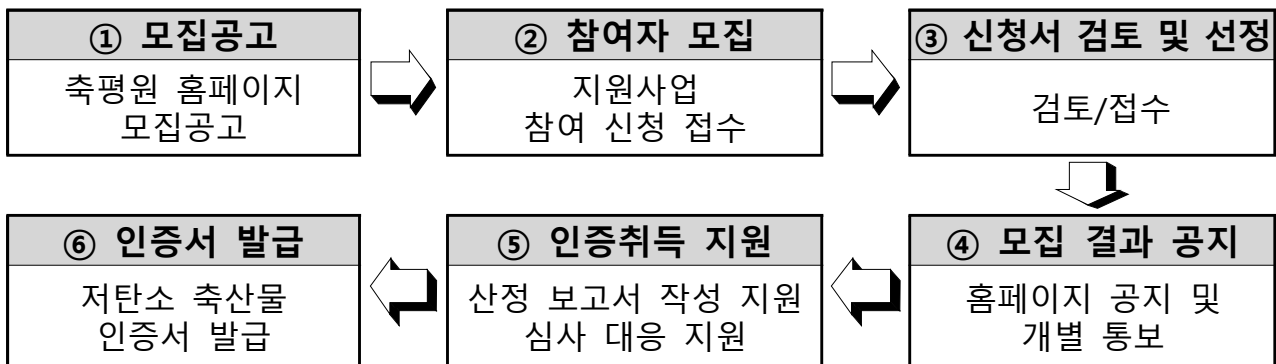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다 음 -

1. 사업명 :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2. 모집 대상 : 돼지(일관 또는 위탁), 젓소 사육 농장
 - 탄소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인증 가능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자
3. 모집 기간 : 2024. 6. 12.(수)~7. 15.(월), 34일간
4. 모집 규모 : 각 25호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모집 농장이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심사진행

5.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 공고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②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 방법

- 제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축산인증반
- 제출방법 : 인터넷, 이메일, 우편(등기), 팩스 및 방문
 - * 인터넷 : 축산정보e음(<https://liis.go.kr/lcb/applyInfo/LcbApplyIndvAgreInfo.lcb>)
 -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우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인증반 앞(우편 접수 시의 경우 접수 마지막 날 도착분까지 인정)
 - * e-mail : lowcarbon@ekape.or.kr, Fax : 044-410-7175
 - * 제출 후 축산인증반에 서류 수신 여부 확인 요망

제출 서류(붙임 참조)

- 저탄소 축산물인증 신청서 1부
- 축산업 허가증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장 사육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무항생제 등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축산인증반

- * 연락처 : 044-410-7052, 7056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신청인의 인증 요건 및 탄소감축기술 등 적합 여부 검토 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별첨 참조)

- 인증신청 가능 축종 : 돼지, 젓소
- 인증 사전취득 여부
- 탄소 감축 기술 적용 여부
- 농장 사육현황 보고서(출하내역 포함)

④ 모집결과 공지

- 모집결과 발표 : 모집 마감 후 1주일 이내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공지/광고 메뉴 게재, 유선(문자) 통보

⑤ 인증취득 지원

- 산정 보고서 작성 및 심사 대응 지원(컨설팅)
- 인증심사비 지원(인증 심사원 직접 파견)

⑥ 유통/홍보 지원

- 저탄소 축산물 유통/홍보 지원(판로확보 지원)

7. 협조 사항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 저탄소 인증 사업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 별첨 1. 저탄소 축산물인증 지원 자격 및 요건 1부.
2.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적용 기술 1부.
3. 저탄소 축산물(돼지)인증 평가 방법 1부.
4. 저탄소 축산물(젓소)인증 평가 방법 1부. 끝.

1. 인증 대상 품목 : 돼지, 젓소

2.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서의 인정 기준

○ 농식품 국가인증 및 지정서 종류(7종)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HACCP(축산물)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함

○ 사전인증 및 지정제도 유효기간

- 유효기간 잔여일이 인증·지정 접수일로부터 신규 인증·지정 120일, 갱신 60일, 변경 30일 이상이어야 함

*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의 효력도 소멸됨

3. 농장 사육 규모

* 기준연도는 모집공고에서 제시

-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 실적이 1,800두 이상인 일관(자돈~모돈) 또는 위탁사육을 하거나, 신청일 기준 모돈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인 농장

- (젓소)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경산우 40두 이상인 농장

별첨2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적용 기술 및 인증 절차

1.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적용 기술

분류기준	번호	구분	저탄소 축산기술명	비고	
A. 사양관리	1	계량	정밀사양	한우	
	2	계량	MSY 생산성 향상	돼지	
	3	계량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젖소	
	4	계량	저메탄사료 급여	한우·젖소	
	5	계량	질소저감사료 급여	한우·돼지·젖소	
	6	비계량	부산물 사료 급여	한우·젖소	
	7	비계량	사료효율 개선	한우·돼지·젖소	
	8	비계량	생산성 향상 장비 도입	한우·돼지·젖소	
	9	비계량	조사료 자가 생산	한우·젖소	
	10	비계량	경제수명 향상	젖소	
B. 가축분뇨 처리	1	계량	퇴비화	강제 공기 공급	한우·돼지·젖소
	2	계량		기계교반	한우·돼지·젖소
	3	계량	액비화		돼지·젖소
	4	계량	정화처리		돼지
	5	비계량	깔짚 관리		한우·젖소
	6	비계량	부숙 촉진 및 부숙도 검사		한우
	7	비계량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한우·돼지·젖소
	8	비계량	가축분뇨의 바이오에너지화		한우·돼지·젖소
	9	비계량	피트 내 슬러리 관리		돼지
	10	비계량	액비순환시스템 활용		돼지
C. 에너지 절감	1	계량	저탄소 인증자재 사용	한우	
	2	계량	신재생에너지 생산	한우·돼지·젖소	
D. 기타	1	사육밀도 적정성		한우·돼지·젖소	
	2	나무식재 활용		한우·돼지·젖소	
	3	축사 악취방지 노력		돼지·젖소	
	4	유통망 연계		한우·돼지·젖소	

※ 감축량 산정 기술 여부는 변동 가능

2. 인증절차

- ① 인증 희망농장 신청서 접수(축산물품질평가원)
- ② 현장 심사 우선순위 평가(축산물품질평가원)
- ③ 농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희망농장, 산정평가원)
- ④ 우선순위에 따른 현장 심사(인증심사반)
- ⑤ 인증 사업대상자 선정(축산물품질평가원)
- ⑥ 저탄소 축산물인증 심의위원회 개최(축산물품질평가원)
- ⑦ 인증 농가 최종 확정 및 통보(축산물품질평가원)

별첨3

저탄소 축산물(돼지)인증 평가 방법

1. 인증 요건

- ① 유기축산, 무항생제,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등 1개 이상 사전 지정받은 농장
- ②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 실적이 1,800두 이상인 일관(자돈~모돈) 또는 위탁사육을 하거나, 신청일 기준 모돈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인 농장
- ③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해당 축종의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10% 이상) 배출한 농장
- ④ 인증 조건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농장

- (사전인증) 유기축산, 무항생제, HACCP, 동물복지, 방목생태, 환경 친화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국가인증을 1개 이상 받은 농장
- (인증점수) 가산정 탄소배출량, 비계량 기술 적용 여부, 기타 항목 등 3개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 농장별 탄소감축 계량기술을 반영하여 가산정한 탄소배출량(kg)이 해당 축종 평균 배출량(kg)보다 10% 이상 적어야 하고,
 - 목표 배출량(2.21kgCO₂eq) 대비 농장별 탄소배출량(kg)을 7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3점 이상 득점, 가산정 탄소배출량·비계량 기술·기타 항목 전체 점수를 합산한 최종 점수가 75점 이상 득점 충족 시 인증

항목	구분	내용	충족 기준
가산정 탄소배출량	감축 수준(%)	$\frac{\text{도체중 1kg당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 (2.21kg)}}{\text{평가대상 농장의 도체중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kg)}}$	10% 이상
	점수	70점	63점 이상
비계량 기술	점수	20점	-
기타 항목	점수	10점	-
총합	점수	100점	75점 이상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술도입 여부와 증빙자료는 사육현황보고서에 기재

** 평가점수는 현장실사를 통해 확정하며, 인증대상자 최종 심의에서 반영

2. 평가 방법

- (가산정 탄소배출량) 계량화가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고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점수 배정(최대 70점)

〈계량화 저탄소 농업기술 평가 항목〉

분류	번호	저탄소 축산기술명	증빙 방식	감축량 산정	비고
사양 관리	1	질소저감사료 급여	사료 구입 증빙 영수증	질소저감사료 급여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비율(%) 적용	-
	2	MSY 생산성 향상	등급·한돈팜스 데이터 확인	MSY 평균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 적용	Tier2
가축 분뇨 처리	3	퇴비화 (퇴비사, 강제공기공급, 기계교반)	서류심사, 현장심사	처리 방식별 감축 비율(%) 적용 해외사례 적용 가능	Tier1
	4	액비화·정화처리 (호기성처리-Aerobic treatment)			
에너지 절감	5	신재생에너지 생산	서류심사, 현장심사	셀비(태양광 등) 전후의 전력 사용량을 사용 기간 동안 평균 사육두수로 나뉘 계산하여 감축 비율(%) 적용	Tier2

* 서류 신청 시 각 기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必

- 평가대상 농장의 도체중 1kg당 온실가스(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배출량을 산정하며, 평균 배출량(2.69kgCO₂eq)*의 18%**감축 수준인 목표 배출량(2.21kgCO₂eq)을 만점으로 평가대상 농장의 실적을 평가

* 돼지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도체중으로 나뉘 더한 값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24.1.3.)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text{산식}) = \frac{\text{도체중 1kg당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2.21\text{kg})}{\text{평가대상 농장의 도체중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kg)} \times 70$$

- ① 도체중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 돼지 두당 온실가스 배출량 ÷ 평균 도체중(단위: kgCO₂eq)
- ② 평가대상 농장의 도체중은 농장의 기준연도 출하 성적의 평균 도체중으로 계산

- MSY 생산성 향상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비율(%)

MSY 생산성 향상				
구분	18.5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2.5 ^{미만}	22.5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비율(%)	0.8	1.6	2.3	2.8

○ (비계량 기술 적용 여부) 계량화가 불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은 목록화된 기술의 적용 수준별로 0~4점 부여(최대 20점)

- 비계량화 저탄소 농업기술의 적용 수준은 적용 비율, 적용 기간 등 고려

〈비계량화 저탄소 농업기술 평가 항목〉

분류	번호	저탄소 축산기술명	평가점수			비고
			도입	일부	미도입	
사양 관리	1	사료효율 개선	4	3~1	-	유용 미생물, 유기산제, 비타민, 미네랄 등 사료첨가제 당 1점
	2	생산성 향상 장비 도입	2	1.5~0.5	-	모든(포유)급이기, 사료 급이기, 환기·환경 제어기, 음수 투약기 등 장비 도입 시 각 0.5점
가축 분뇨 처리	3	피트 내 슬러리 관리	4	-	-	월 1회 이상 처리, 침전물 모두 제거 시 4점
	4	분뇨의 바이오차 생산	2	-	-	분뇨의 비농업계 이용 시 2점
	5	분뇨의 바이오 에너지화	4	2	-	분뇨의 에너지화 시설(고체연료, 바이오가스) 연계 시 각 2점
	6	액비순환시스템 활용	4	-	-	돈사 내 환경, 악취 개선 등을 위해 액비순환시스템 활용 시 4점
합계						

* 서류 신청 시 증빙자료(데이터, 사진 포함) 제출 必

○ (기타) 그 밖에 기타 농장관리 사항에 대한 점수 부여(최대 10점)

- 사육밀도, 나무식재, 악취 저감, 유통망 확보 여부 등 가점 사항 반영

〈기타 농장관리 항목〉

분류	번호	평가 항목	평가점수		비고
			해당 있음	해당 없음	
사육 밀도	1	저밀도 사육환경 조성	3	-	축종별 적정 사육밀도 이하 준수 (이력제 적정 사육 면적 계산기)
나무 식재	2	산림 탄소흡수원 보전	3	-	대한한돈협회 캠페인 참여 농장, 축사 내외 나무 식재(방취림 등) (사육두수 대비 5% 이상)
악취 방지	3	축사 악취방지 노력	2	-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등 설비 활용 각 1점
유통망 확보	4	안정적 유통 판로확보	2	-	계약에 의한 고정 판로확보
합계					

별첨4

저탄소 축산물(젖소)인증 평가 방법

1. 인증 요건

- ① 유기축산, 무항생제,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등 **1개 이상** 사전 지정받은 농장
- ② 기준연도 호당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경산우 사육 두수가 40두 이상인 농장
- ③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해당 축종의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10% 이상) 배출한 농장**
- ④ 인증 조건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농장**

- (사전인증) 유기축산, 무항생제, HACCP, 동물복지, 방목생태, 환경 친화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국가인증을 1개 이상 받은 농장
- (우유 생산량) 축산물 이력제 기준 농장별 연간 평균 사육두수, 농장별 연간 집유 실적 증빙(유업체 또는 개량사업소 검증)자료 제시
- (인증점수) 가산정 탄소배출량, 비계량 기술 적용 여부, 기타 항목 등 3개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 농장별 탄소감축 계량기술을 반영하여 가산정한 탄소배출량(kg)이 해당 축종 평균 배출량(kg)보다 10% 이상 적어야 하고,
 - 목표 배출량(0.55kgCO₂eq) 대비 농장별 탄소배출량(kg)을 7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3점 이상 득점, 가산정 탄소배출량·비계량 기술·기타 항목 전체 점수를 합산한 최종 점수가 75점 이상 득점 충족 시 인증

항목	구분	내용	충족 기준
가산정 탄소배출량	감축 수준(%)	$\frac{\text{우유 } 1\text{kg당 온실가스 목표배출량}(0.55\text{kg})}{\text{평가대상농장의 우유 } 1\text{kg당 온실가스 배출량}(kg)}$	10% 이상
	점수	70점	63점 이상
비계량 기술	점수	20점	-
기타 항목	점수	10점	-
총합	점수	100점	75점 이상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술도입 여부와 증빙자료는 사육현황보고서에 기재

** 평가점수는 현장실사를 통해 확정하며, 인증대상자 최종 심의에서 반영

2. 평가 방법

- (가산정 탄소배출량) 정량평가가 가능한 저탄소 축산기술 적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고 목표배출량을 기준으로 점수 배정(최대 70점)

〈가산정 탄소 배출량 평가 항목〉

분류	번호	저탄소 축산기술명	증빙 방식	감축량 산정	비고	
사양 관리	1	저메탄사료 급여	사료 구입 증빙 영수증	사료 급여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비율(%) 적용	-	
		질소저감사료 급여				
	2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협회, 농협 또는 자체 데이터	두당 유량 생산량 평균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 적용	Tier2	
가축 분뇨 처리	3	퇴비화	퇴비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처리방식별 감축 비율(%) 적용 * 위탁처리의 경우 업체별 처리방식 확인	Tier1
			강제공기공급			
		기계교반				
		액비화	호기성처리			
에너지 절감	4	신재생에너지 생산	서류심사, 현장실사	설비(태양광 등) 전후의 전력 사용량을 사용 기간 동안 평균 사용두수로 나눠 계산하여 감축 비율(%) 적용	Tier2	

* 서류 신청 시 각 기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必

- 평가대상 농장의 우유 1kg당 온실가스(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배출량을 산정하며, 평균 배출량(0.67kgCO₂eq)*의 18%** 감축 수준인 목표 배출량(0.55kgCO₂eq)을 만점으로 평가대상 농장의 실적을 평가함

* 젖소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우유 생산량으로 나눠 더한 값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24.1.3.)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text{산식}) = \frac{\text{우유 1kg당 온실가스 목표배출량}(0.55\text{kg})}{\text{평가대상 농장의 우유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kg)} \times 70$$

- ① 평가대상 농장의 우유 생산량은 농장의 기준연도 내 두당 평균 우유 생산량으로 계산
- ② 우유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 젖소 두당 온실가스 배출량 ÷ 평균 우유 생산량(단위: kgCO₂eq)

-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비율(%)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구분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비율	4.6	9.1	13.7	18.2

○ (비계량 기술 적용 여부) 정량평가가 어려운 비계량 저탄소 축산기술은 목록화된 기술의 적용 수준별로 0~4점 부여(최대 20점)

- 비계량화 저탄소 축산기술의 적용 수준은 적용 비율, 적용 기간 등 고려

〈비계량화 저탄소 축산기술 평가 항목〉

분류	번호	저탄소 축산기술명	평가점수			비고
			도입	일부	미도입	
사양 관리	1	사료효율 개선	4	3~1	-	유용 미생물, 유기산제, 비타민, 완충제 등 사료첨가제 당 1점
	2	경제수명(도태산차) 향상	3	2~1	-	평균 도축개월령, 75개월 이상 3점, 70개월 이상 2점, 65개월 이상 1점
	3	조사료 자가 생산	3	2~1	-	두당 1,000m ² 이상 3점, 900m ² 이상 2점, 800m ² 이상 1점
	4	부산물 사료 급여	4	3~1	-	부산물을 활용한 TMR, TMF 등 급여 여부 (대두박, 미강, 깻묵, 벼서 등 부산물당 1점)
	5	생산성 향상 장비 도입	1	0.5	-	사료자동급이기, 체중측정기 등 장비 도입 시 각 0.5점
가축 분뇨 처리	6	바닥 깔짚 관리	3	2~1	-	스키드로더, 포크레인 등 장비 활용 주 1회 3점, 월 2회 2점, 월 1회 1점
	7	분뇨의 바이오차 생산	1	-	-	분뇨의 비농업계 이용 시 1점
	8	분뇨의 바이오 에너지화	1	-	-	분뇨의 에너지화(고체연료) 시설 연계 시 1점
합계						

* 서류 신청 시 증빙자료(사진 포함) 제출 必

○ (기타) 그 밖에 기타 농장관리 사항에 대한 점수 부여(최대 10점)

- 사육밀도, 나무식재, 악취방지, 유통망 확보 여부 등 가점 사항 반영

〈기타 농장관리 항목〉

분류	번호	평가 항목	평가점수		비고
			해당 있음	해당 없음	
사육 밀도	1	저밀도 사육환경 조성	3	-	축종별 적정 사육밀도 이하 준수 (이력제 적정 사육 면적 계산기)
나무 식재	2	산림 탄소흡수원 보전	3	-	농장 내·외부 식재된 나무 (사육두수 기준 20% 이상)
악취 방지	3	축사 악취방지 노력	2	-	유용 미생물(EM) 등 활용 시 2점
유통망 확보	4	안정적 유통 판로확보	2	-	계약에 의한 고정 판로확보
기타 합계					